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국내 반입차단 원료·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(안 제44조의3, 제44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**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에 대한 지정 및 해제의 법적근거 마련***됨에 따라 **법률에서 위임된 사항** 규정

* '21. 9.17.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→ '22. 6.10. 개정·공포(12.11. 시행)

-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 **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** 규정하기 위한 **하위법령 개정 필요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(지정 기준) 마약류, 전문·일반의약품, 부정물질,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**

○ **(지정·해제 절차) 심의위원회**를 거쳐 **공고** 및 **인터넷 홈페이지**에 게시

*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, 지정 및 해제 사유, 지정일·해제일

○ **(심의위원회) 원료·성분의 특성**을 **고려**하여 **각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구성·운영**

* 중앙약사심의위원회,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,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**반입차단 성분등 지정기준 명확화**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회수·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(안 별표 13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**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조치**를 하지 않거나 **압류·폐기**를 **거부·방해·기피하는 등의 행위**에 대한 **행정처분 법적근거 마련***

- **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** 규정하기 위한 **하위법령 개정 필요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출입·수거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**

* (1차) 영업정지 1개월 (2차) 영업정지 2개월 (3차) 영업정지 3개월

○ **회수조치 미실시하거나 회수계획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**

* 미조치 (1차) 영업정지 2개월 (2차) 영업정지 3개월 (3차) 영업등록 취소
** 미보고 (1차) 영업정지 1개월 (2차) 영업정지 2개월 (3차) 영업정지 3개월

○ **압류·폐기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와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**

* (1차) 영업정지 1개월 (2차) 영업정지 2개월 (3차) 영업정지 3개월
** 회수·폐기명령 미이행을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: 영업등록 취소 와 해당 제품 폐기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**영업자 회수 등 준수율 제고**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3.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(안 별표 8, 별표 13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**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가 마련**됨에 따라,

-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**지정된 성분·원료를 포함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 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**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(준수사항) 반입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**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됨

○ **(처분기준)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**

* (1차) 영업정지 5일 (2차) 영업정지 10일 (3차) 영업정지 15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4.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(안 별표 9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**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**을 **서류·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** 하는 **'계획수입신속통관'** 제도를 운영 중('20년~)

- **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및 세계기후 변화**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**신속한 통관 지원 필요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서류 및 현장검사 생략 대상**에 **자사제조용 정제·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 추가**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 업계 지원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5. 수입검사의 민간검사기관 활용(안 별표 9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**매년 수입식품**이 **지속적**으로 증가함에 따라 **효율적인 검사 수행을 위해 민간검사기관***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 증대

- **위해정보에 따른 정밀검사, 무작위 표본검사**는 지방청(민간 의뢰 가능)**에서, 그 외 정밀검사는 민간검사기관**에서 **수행 중*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부득이 민간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정밀검사**를 제외하고,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**민간검사기관 활용으로 수입검사의 효율성 도모**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6.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(안 별표 10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**수입식품**에 대한 **효율적 관리**를 **최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 실시, 이후 수입되는 동일사·동일식품**의 경우는 **서류 및 무작위 검사**

- **안전성과 관계가 낮은 제품명**까지 **동일사·동일식품의 요건**에 포함됨에 따라, **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의 경우**도 **정밀검사 실시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**동일사 동일수입식품** 중 **가공식품, 축산물가공품**에 한해 **“제품명” 삭제**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**영업자의 보관 및 검사수수료 비용 절감**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7. 수출농수산물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(안 별표 14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**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** 발급 신청 시 **영업허가·신고 또는 등록증, 품목제조보고서, 수출신고필증**을 **제**출토록 규정

- 단순 처리 농수산물은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위생증명서 신청 시 품목제조보고서 **제출이 불가하므로 개선 필요**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단순처리 농·임·수산물의 경우도 **위생증명서 발급이 가능**토록 **품목제조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허용**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**농·임·수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으로 수출 진흥 기여**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